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미 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계적인 공공체육시설 확충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함.

○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선주원남동 활성화계획 추진으로, 금리단 상생팩토리 조성, 행복 놀이터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각산마을 일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와 노후 건축물 밀집 등 쇠퇴하는 도시의 활력 회복과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검성지 생태공원의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혼잡을 경감시키고 주민들의 공원 이용률을 높이하고자 함.

○ 육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 문화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하여 낙후되고 취약한 환경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정주 여건 제공하고자 함.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농업기술센터를 농특산물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산물가공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 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도량동 92번지 일원 *시유지
- 대 상 : 건물 지상3층, 연면적 1,400m²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 4,200백만원(기금 1,000, 시비 3,200)
- 기준가격 : 건물 3,800백만원 *신축
- 주요시설
 - 1층 : 사무실(60m²), 주차장 등
 - 2층 : 스쿼시장 5면(350m²), 남녀 탈의실, 물품창고 등
 - 3층 : 다목적체육관(400m²), 휴게실(30m²) 등

□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 사업명 : 「각산마을 상생공동체 : 금리단 사람들」
- ▷ 위치 : 구미시 원평동 435-1번지 일원 (160,578㎡)
-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 사업비 : 199.27억원
 - 뉴딜사업비 : 117억원(국 70.2 도 11.7 시 35.1)
 - 기타사업 : 82.27억원(부처협업 14.97 공공임대주택 29.3 한전지중화 26 점포리모델링 12)
- ▷ 주요내용 : 금리단 상생팩토리 조성, 금리단길 통합경관 개선,
어르신 행복놀이터 조성,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위치 : 원평동 417-1번지 외 3필지
- 대상 : 토지 3필지 1,666㎡, 건물 2개동, 연면적 1,654㎡
- 기준가격 : 5,758백만원
 - 토지 : 846백만원 * 공시지가
 - 건물 : 4,862백만원 (시설매입비 102백만원, 건축비 4,760백만원)
 - 기타 : 50백만원 (쌈지공원 공사비)

○ 취득재산 상세내역

< 종합지원 복합거점 '금리단 상생팩토리' 조성사업 >

- 위치 : 원평동 417-1번지, 원평동 417-12번지
- 대상 : 토지 2필지 1,594㎡, 건물 지상3층, 연면적 1,420㎡
- 기준가격 : 5,012백만원
 - 토지 : 807백만원 * 공시지가
 - 시설매입 : 102백만원 * 시가표준액
 - 건물 : 4,103백만원 * 신축

- 사업내용

- 마을카페 및 마을오피스, 건강체험교실, 공공지원공간 등 거점시설 조성
-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역량 강화 도모

< 각산마을 어르신 '행복놀이터' 조성사업 >

- 위 치 : 원평동 435-10번지 *시유지
- 대 상 : 건물 지상3층, 연면적 234m²
- 기준가격 : 건물 657백만원 * 신축
- 사업내용
 - 경로당 복합 노인복지시설 건립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등

<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쌈지공원 조성) >

- 위 치 : 원평동 439-23번지
- 대 상 : 토지 1필지 72m²
- 기준가격 : 89백만원
 - 토 지 : 39백만원 * 공시지가
 - 시설비 : 50백만원 (공사비 등)
- 사업내용 : 도로다이어트, 마을안길 포장정비, 스마트 가로 조성 등

별첨_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별 상세내용

○ 상생팩토리 조성사업

- 도시재생 복합지원 상생거점 건립(H/W)
 - 마을카페, 건강체험교실, 마을오피스, 공공지원센터, 다목적 교육공간 등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S/W)
 -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에 따른 사업 운영·관리·홍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 작은행복 나눔장터 운영지원(S/W)
 -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지원

○ 금리단길 통합경관 개선사업

-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H/W)
 - 금오산로22길 도로다이어트, 마을안길 포장정비, 생활밀착형 스마트 가로 조성
- 금리단길 건축경관 특화(H/W + S/W)
 -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 행복놀이터 조성사업

- 경로당 복합 노인복지시설 건립(H/W)
 - 경로당, 어르신 체력단련장 등 복합조성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S/W)
 - 노인건강예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운영·관리

○ 통합역량 강화사업

- 각산마을 '소확행 여행단' 운영(S/W)
 - 지역주민주도 연차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주민 워크숍 개최
- 도시재생 각산 마을학교 운영(S/W)
 - 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추진
- 주민제안사업(S/W)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 도시재생 홍보 및 행사 개최
- 도시재생기록화사업(S/W)
 - 도시재생 통합 백서 발간,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및 성과진단

□ 점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 위 치 : 황상동 63-1번지 외 2필지
- 대 상 : 토지 3필지 1,019m²
- 사업기간 : 2021년
- 사 업 비 : 686백만원
 - 토지매입 : 566백만원 * 가감정액
 - 시설설치 : 120백만원
- 기준가격 : 토지 223백만원 * 공시지가
- 사업내용 : 주차편의시설(노외주차장 20면) 조성

□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 치 : 옥성면 주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시비 1,200)
- 사업내용
 - 주아령활력센터조성 : 주아령활력센터(짬질방, 빨래방), 게이트볼장, 광장
 - 주아령동아리방조성 : 녹색농촌체험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 주아령안전안길조성 : 행복쉼터, 무선방송시스템 1식

< 주아령 활력센터, 게이트볼장 >

- 위 치 : 옥성면 주아리 142-3번지 외 5필지
- 대 상 : 토지 2,055m²
 -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376m² (주아령활력센터)
 -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530m² (게이트볼장)
- 기준가격 : 토지 62백만원 *공시지가
 - 건물 1,043백만원 (주아령활력센터 신축)
 - 건물 385백만원 (게이트볼장 신축)

< 행복쉼터 >

- 위 치 : 옥성면 주아리 309-1번지 외 1필지
- 대 상 : 737m²
- 기준가격 : 토지 39백만원 *공시지가

□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선산읍 이문리 571-2번지 *시유지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 옥외전시장 내)
- 대 상 :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495m²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총사업비 : 1,9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400)
 - 신축비 1,000백만원
 - 장비 및 기자재 구입 700백만원
 - 그 외(교육, 제품 개발 등) 200백만원
- 기준가격 : 건물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 공동 이용 공간 시설기반 조성
 - 농산물 가공 기자재 및 장비 설치
 - 제품 개발 공동연구, 가공기술 이전 및 창업지원 등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23	10,304 1식	12,31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14 2	5,477 372	1,170 102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6 1	4,455 1식	10,988 5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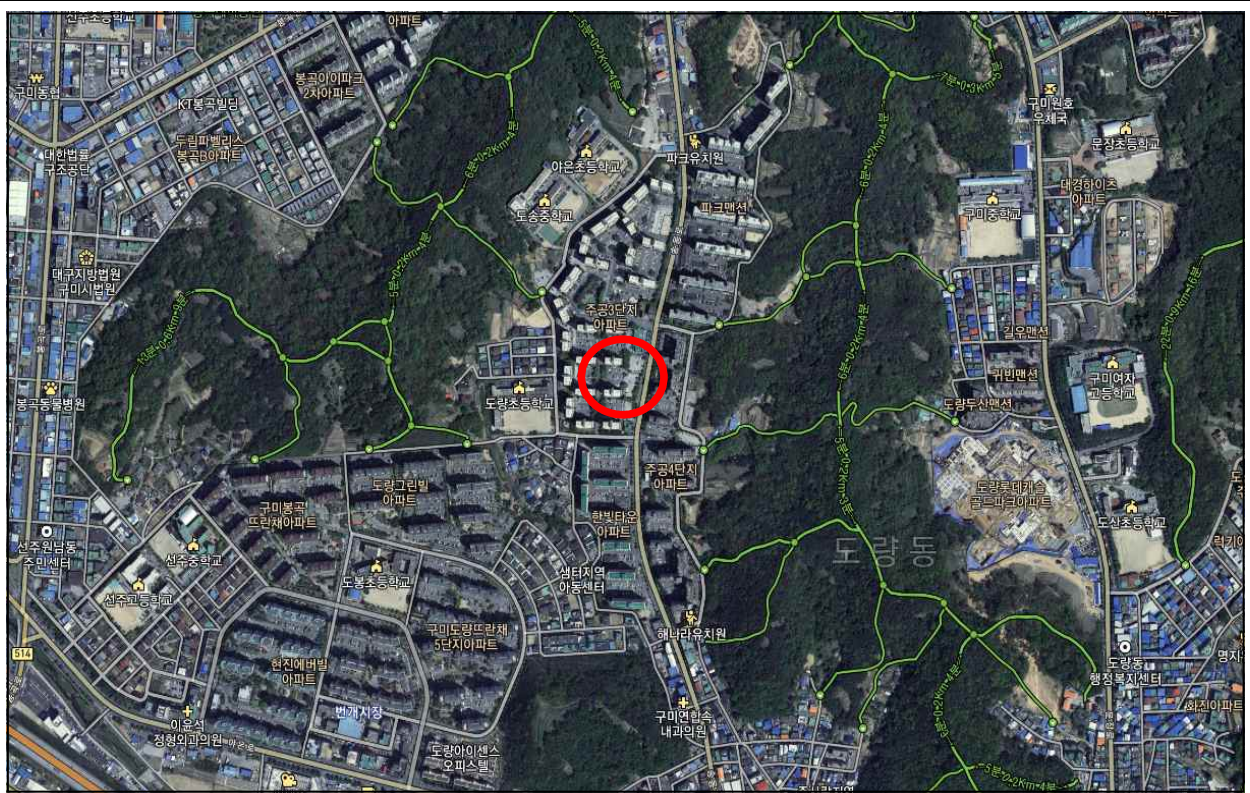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 ²)					
총계				12,310				
소계				9,781				
취득	건물	도량동 92	1,400	3,800	2020~ 2022년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미시	신축
	토지	원평동 417-1	1,214	617	2021~ 2024년	금리단 상생팩토리 조성	김OO 외 3	매입
	〃	원평동 417-12	380	190	〃	〃	〃	〃
	건물	원평동 417-1	273	75	〃	〃	김OO외 1	〃
	〃	원평동 417-12	99	27	〃	〃	김OO	〃
	〃	원평동 417-1 외 1필지	1,420	4,103	〃	〃	구미시	신축
	건물	원평동 435-10	234	657	〃	행복놀이터 조성	〃	〃
	토지	원평동 439-23	72	39	〃	쌈지공원 조성	국유지 (기재부)	매입
	기타	원평동 439-23	1식	50	〃	〃	구미시	신설
	토지	황상동 산14-36	227	159	2021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한국 농어촌공사	매입
	〃	황상동 61-1	63	14	2021	〃	〃	〃
	〃	황상동 63-1	729	50	2021	〃	〃	〃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소계				2,529				
취득	토지	주아리 142-3	572	17.3	2021년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주아령활력센터 게이트볼장)	황OO	매입
	〃	주아리 143-5	155	4.7	〃	〃	황OO	〃
	〃	주아리 349-5	516	15.6	〃	〃	신OO	〃
	〃	주아리 965-1	453	13.7	〃	〃	국(건설부)	〃
	〃	주아리 965-47	96	2.9	〃	〃	〃	〃
	〃	주아리 973	263	7.8	〃	〃	〃	〃
	〃	주아리 309-1	390	20.6	〃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행복쉼터)	황OO	〃
	〃	주아리 310-7	347	18.4	〃	〃	육OO	〃
	건물	주아리 142-3 일원	376	1,043	2023년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주아령활력센터)	구미시	신축
	〃	〃	530	385	〃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게이트볼장)	〃	〃
	건물	선산읍 이문리 571-2	495	1,000	2022년 예정	농산물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	구미시	신축

위 치 도

□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 소재지 : 구미시 도량동 92번지 일원



□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구역 : 구미시 원평동 435-1번지 일원 (160,578㎡)



속산마을 상생공동체 금리단 사람들

“하나의 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
공간 재생과 열린 소통으로 모두의 마을로 상생하다.

목표1 “으쌔으쌔 금리단” 금리단 주민들의 마을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기

사업1 종합지원 상생거점 ‘금리단 상생 팩토리’ 조성사업

- | | |
|--------------------------------|---------------------------|
| 1-1 복합지원 상생거점 건립 (H/W) | 1-2 현장지원센터 운영 (S/W) |
| - 마을카페 및 이촌신 건강체험교실 |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 운영 |
| - 마을오피스 및 통합공공지원센터(주민센터, 헌당센터) | - 마을소식지 발간 및 주민 개혁신스 운영지원 |
| - 다목적 복합문화교육공간 및 공유현장 전당빌라 | 1-3 작은행복 나눔정터 운영지원 (S/W) |

목표2 “여기저기 금리단” 마을을 연결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상생이 열릴 수 있게

사업2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금리단길’ 통합경관 개선사업

- | | |
|-----------------------|----------------------------------|
| 2-1 금리단길 보행환경개선 (H/W) | 2-2 금리단길 건축경관 특화 (H/W+S/W) |
| - 금오산로 22길 도로 다이어트 | -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
| - 마을안길(도시계획도로) 포장정비 |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의역정비 및 담장쌓기) |
| - 생활밀착형 스마트 가로 조성 | 2-2 연계 소규모정포(상가) 리모델링(기금활동 민간사업) |

목표3 “한울다리 금리단” 마을을 연결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상생이 열릴 수 있게

사업3 각산마을 어르신 ‘행복 놀이터’ 조성사업

- | | |
|----------------------------|------------------------------|
| 3-1 경로당 복합 노인복지시설 건립 (H/W) | 3-2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S/W) |
| - 각산마을 경로당 | - 고령자 생활문제 해결 시민협력형 모델 연구 |
| - 각산마을 독거노인 금융생활관 | - 스마트 라일라 마을관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 - 각산마을 어르신 취미교당 | - 스마트 ICT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

목표4 “시골벽적 금리단” 마을을 연결하고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상생이 열릴 수 있게

사업4 금리단 공동체 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 | | |
|-----------------------------|---------------------|
| 4-1 소통회의 ‘소확행 여행단’ 운영 (S/W) | 4-3 주민재난사업(S/W) |
| 4-2 도시재생 각산 마을학교 운영 (S/W) | 4-4 도시재생기록화 (S/W) |
| - 상반기 주민재난사업 실행 마을학교 운영 | - 도시재생 통합 역사 발간 |
| - 하반기 주점방에 아카데미 마을학교 운영 | - 성과지표별 모니터링 및 성과전단 |

중앙부처 협업사업(기추진) 및 공기업(나), 지자체 사업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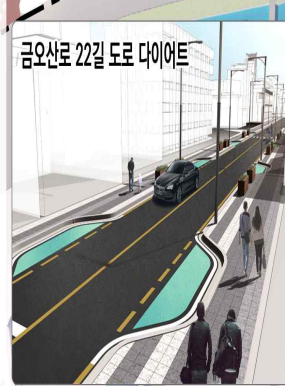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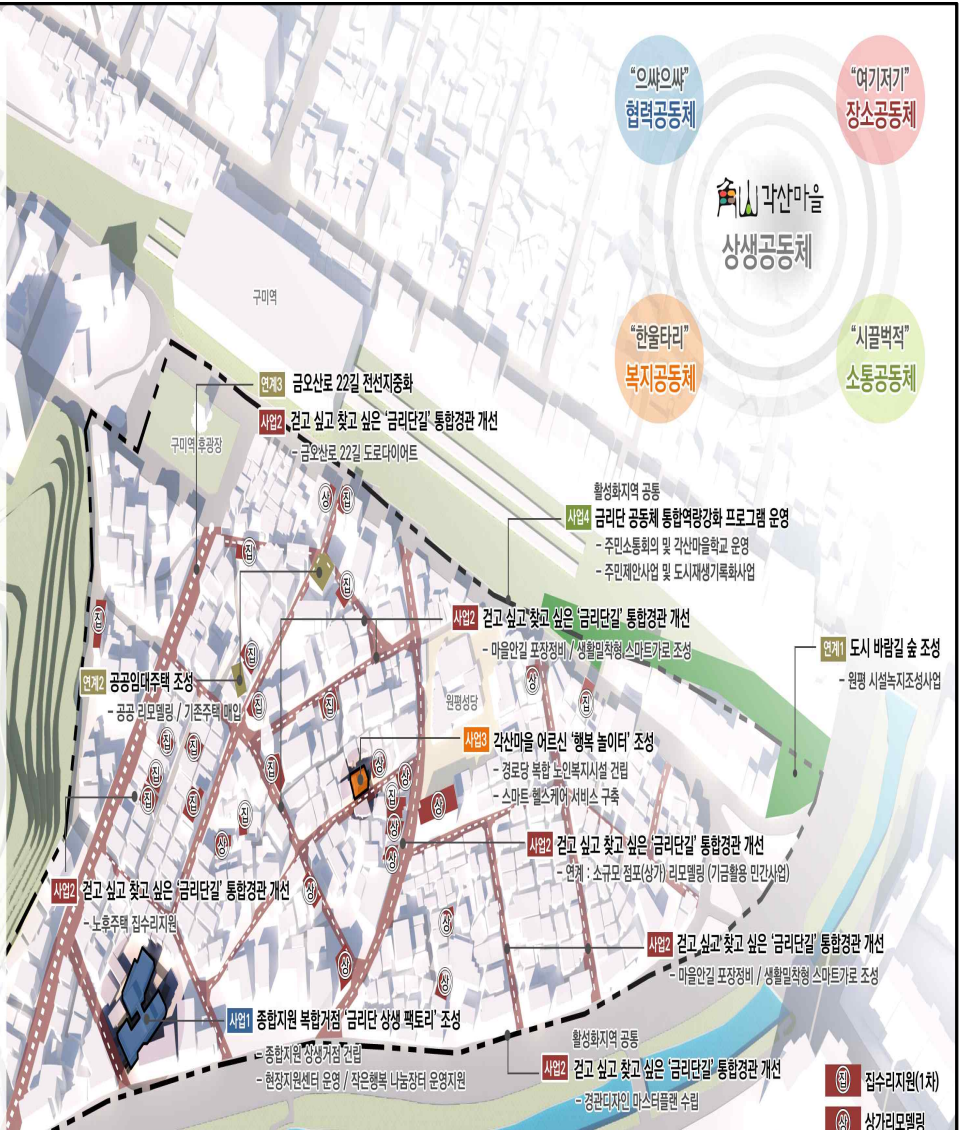
연계1 부처협업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 원형시설물 조성사업 (연결숲 조성)

연계2 공기업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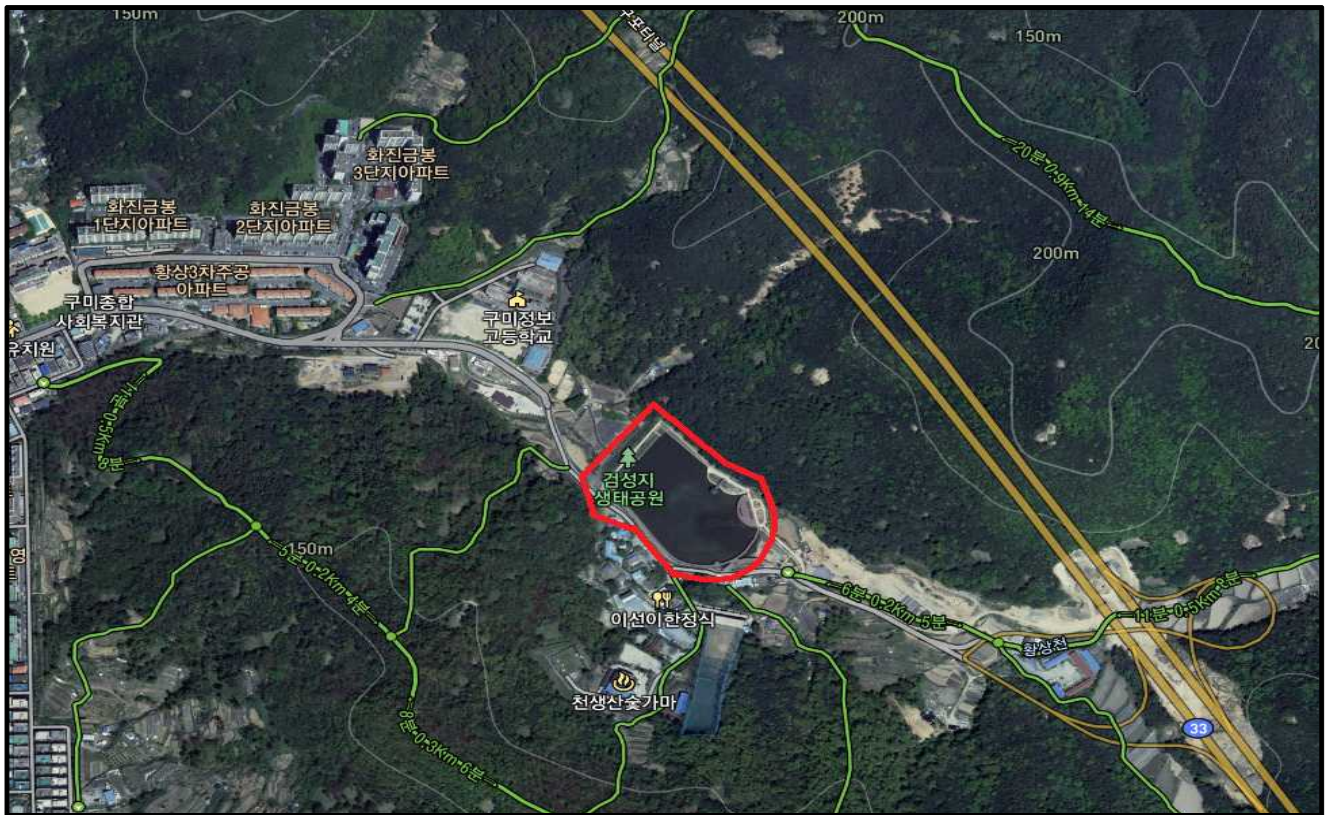
- LH 공공 리모델링 임대사업, LH 거주주택 매입 임대사업

연계3 공기업 금오산로 22길 도로 다이어트 연계 전선지중화 사업



□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 소재지 : 황상동 산 14-36번지 외 2필지



○ 사업목적

- 검성지 생태공원과 천생산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명 :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 총사업비 : 686백만원
 - 부지매입비 : 566백만원
 - 설치비 : 120백만원

○ 추진방향

- 사업편입토지 정리 및 매입(한국농어촌공사 소유)
- 관련부서 협의 후 주차시설 설치

○ 기대효과

- 검성지 주변 주차 혼잡 개선
- 주차편의 증대로 인한 검성지 생태공원 이용객 증가



□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소재지 :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일원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71-2 (농업기술센터 내)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박 정 희
	담 당 자	황 경 아 (480-5072)